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2.01)

- 1. 건설위치**
- A-4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79번지 일원 고양장항 A-4블록
 - A-5블록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34-76번지 일원 고양장항 A-5블록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A-4블록, A-5블록 중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신청하고자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A-4블록 : 총 1,566호 (공공분양 994호, 행복주택 572호)
 - A-5블록 : 총 759호 (공공분양 444호, 행복주택 315호)
 - ※ 당첨자의 동·호배정은 블록 및 공급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만 6세 이하 : 2015.12.02 이후 출생(태아포함)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A-4블록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56A	기존거주자	22	-	56.82	23.7821	6.8170	37.5892	125.0083	104,400	5,220	99,180	382,800	(+) 45,000 (-) 90,000	149,400 14,400	157,800 570,30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4.03 (예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251	251	56.82	23.7821	6.8170	37.5892	125.0083	104,400	5,220	99,180	382,800	(+) 45,000 (-) 90,000	149,400 14,400	157,800 570,300			
56A-1 (주거 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23	23	56.82	23.7821	6.8170	37.5892	125.0083	104,400	5,220	99,180	382,800	(+) 45,000 (-) 90,000	149,400 14,400			

■ A-5블록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56A	기존거주자	7	-	56.82	23.6814	8.6981	41.7280	130.9275	103,200	5,160	98,040	378,400	(+) 45,000 (-) 89,000	148,200 14,200	153,400 563,810	6~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4.03 (예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139	140	56.82	23.6814	8.6981	41.7280	130.9275	103,200	5,160	98,040	378,400	(+) 45,000 (-) 89,000	148,200 14,200	153,400 563,810			
56A-1 (주거 약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13	13	56.82	23.6814	8.6981	41.7280	130.9275	103,200	5,160	98,040	378,400	(+) 45,000 (-) 89,000	148,200 14,200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A-4블록, A-5블록 중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신청하고자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각 블록별 일부 세대는 당해 단지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공급호수는 향후 지자체(고양시)와의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A-4블록 : 56A형 2개호 / A-5블록 : 56A형 3개호)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장항 A-4블록·A-5블록 행복주택은 발코니확장형, 공간구성은 기본형, 바닥재는 기능성 롬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3구형)이 설치됩니다.

블록	공급형	공간 구성	
A-4	56A·56A-1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
A-5			

- **56A-1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4.03)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 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세대 내 중복신청, 블록별 중복신청 전부 포함)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㉓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㉓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㉓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㉓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태아포함)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인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인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지역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	고양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 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 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지역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모두 적용)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배점 →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3-3. 기존거주자

■ 기존거주자(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우편안내 예정이오니 ‘우편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p>■ 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p> <p>'22.12.12.(월) 10:00 ~ 12.15(목) 18:00</p> <p>※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p>	<p>'22.12.22.(목) 17:00 이후</p> <p>(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p>	<p>■ 인터넷(PC·모바일) '22.12.26.(월) 10:00 ~ 12.29.(목) 16:00</p> <p>※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p> <p>■ 등기우편접수 '22.12.26.(월) ~ 12.29.(목)</p> <p>※ 우편접수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p> <p>* '22.12.29.(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p>	<p>'23.04.20.(목) 17:00 이후</p> <p>(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p> <p>※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p>	<p>■ 전자계약 '23.05.02.(화) 10:00 ~ 05.04.(목) 18:00</p> <p>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p> <p>※전자계약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p> <p>※ 계약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p>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며 **본인이 신청한 블록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합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 접수 및 계약 일시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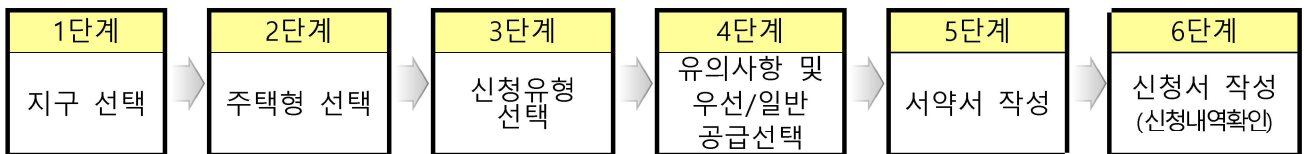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신청하고자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2.12.12(월) 10:00부터 '22.12.15(목) 18:00까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2.12.12(월) 10:00부터 '22.12.15(목) 18:00까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2.12.22.(목)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 회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시 본인이 신청한 블록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기한 내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아래의 제출방법에 따라 서류제출 마감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서류미도달, 일반우편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① 등기우편 서류접수 [제출기한 : '22.12.26.(월) ~ 12.29.(목), '22.12.29.(목)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2.12.29)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고양장항 A-4블록 혹은 A-5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 봉투 겉면에 "고양장항 [A-4블록 혹은 A-5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블록명, 신청형" 반드시 기재)
- ②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제출기한 : '22.12.26.(월) 10:00 ~ 12.29.(목) 16:00]
 - 인터넷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 인터넷 서류제출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2.0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참고)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공사양식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2)

<p>자산 보유 사실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p>1통 (공사양식3)</p>
<p>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p>1통 (공사양식4)</p>
<p>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p>1통</p>
<p>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p>1통</p>
<p>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으로 신청인과 동일등본에 기재된 타인의 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계층별 "해당세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신청자 세대가 제3자인 세대주 등본에 동거인으로 거주중인 경우 등) 	<p>1통</p>
<p>임신진단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p>1통</p>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p>신혼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p>행정복지센터</p>
<p>신혼부부 계층 예비 신혼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p>행정복지센터</p>

	해당자만 제출	<p>[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능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연금 공단</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직장</p> <p style="text-align: center;">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p>
--	--------------------	--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정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0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0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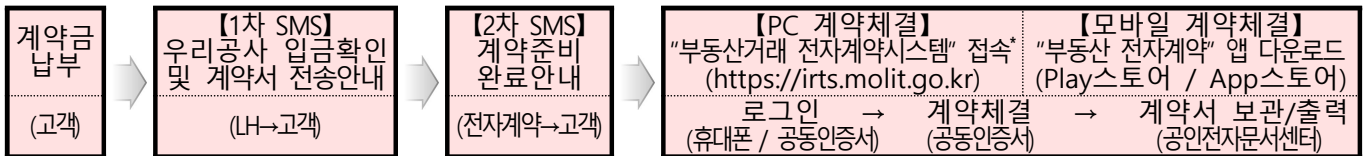
■ 당첨자 발표 [2023.04.20(목) 17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블록 및 공급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여 발표하며,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자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확인시 **본인이 신청한 블록명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기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5.02(화) 10:00 ~ 2023.05.04(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중 각각 1회(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리공사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총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중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40%;">입주자격</th> <th style="width: 60%;">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body> </table>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입주자(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턴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의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rowspan="2" style="width: 40%;">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 style="width: 60%;">할증비율</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30%;">최초 갱신계약 시</th> <th style="width: 30%;">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만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2년의 경우 3,55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p>※ 청약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지구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29호)로 승인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이행, 지자체의견, 민원등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 내 서남단에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아직 미정이며 차후 결정됨 - 지구 밖 남측에 자유로 및 제2자유로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밖 북측에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밖 서측에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밖 남서측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지구 내 주유소가 들어올 예정임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 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행복주택·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민간임대·민간분양·주상복합용지**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조성되며,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로 계획되어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지구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장항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은 해당 지자체의 소하천(장항천) 폐지 고시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시까지 수로 정비 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로 정비 등 공사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홍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 2개소 계획되어 있음**
- 청약 전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A-5블록 남측 경계부에 방음벽 설치 예정임(높이 :7m · 연장 : 135m,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로 본 단지과 인접한 도로 및 보도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A-4블록 서측 및 A-5블록 동측에 위치한 근린공원1(가칭)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공원 세부 계획에 따라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단지는 당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착공되는 단지로, 지구내외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1	장향초(가칭)	'24.09
중학교	중1	장향중(가칭)	미정
고등학교	고1	장향고(가칭)	미정

- ※ 초등학교·중학교는 지구 내 공동주택 블록별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해당블록(A-4BL·A-5BL) 입주시점에 학교설립 및 개교가 어려울 수 있음
-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공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층고 기준으로 지하1층은 3.4m, 지하2층은 2.7m로 계획되었음
- 본 단지는 고양장항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행복주택(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이 같은 동, 같은 라인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본 단지는 행복주택(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혼합단지로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주택유형(분양, 임대)별 구분 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별 일부라인 저층부는 동출입구 및 세대비움(조경설계, 쉼터 등)으로 계획되어, 일부세대는

- 소음, 동선, 시선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종합보육센터,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동 저층부 세대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자세한 위치는 팸플릿 단지배치도 참조)
 - 단지 내 환기탑(D·A)이 배치되어 소음 및 열풍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위치는 팸플릿 단지배치도 참고)
 -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구역, 피난 구역 확보를 위하여 각 동 전면, 후면 일부 구간은 조경 식재 등이 식재가 생략·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 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수요가 많을 경우 기존 어린이집 외에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 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종합보육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등의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공용시설물, 도로계획 등 공용부분은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 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청약 시 단지배치도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한 증설은 불가함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으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소음, 분진,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 중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동에서는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뽐칠로 시공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우수 및 결로수 등 배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따라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변압기 및 PAD 스위치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A-4블록】

-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2세대가 1대 사용하는 라인 : 401동 4호·5호라인, 402동 1호·2호라인, 403동·407동·409동·411동 1~6호라인, 404동 1호·2호라인, 405동 4호·5호라인, 406동 1호· 2호 라인, 408동 1호·2호라인, 410동 1호·2호라인 엘리베이터 3세대가 2대 사용하는 라인 : 상기 명기 외 라인(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단지배치도 참조)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1880대이며, 76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별도로 5대(장애인 주차장 1대 포함)가 지상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407 동·409동·410동을 제외한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401동·403동·404동·411동 등)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급속2대(1채널), 완속4대(2채널)가 설치될 예정임
- 407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기는 401 동·405동·407동·409동·411동 옥상 및 지하 PIT층에 설치될 예정임(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08동과 406동 사이 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일부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A-5블록】

-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 2세대가 1대 사용하는 라인 : 501동·502동·506동·508동 1~4호라인, 504동 1~2호라인, 3세대가 2대 사용하는 라인 : 503동·505동·507동 1~3호라인, 504동 3~5 호라인(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단지배치도 참조)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913대이며, 37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별도로 3대가 지상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음
- 남동측 인접 도로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단지 경계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501동, 507동, 508동)는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발전기실/전기실, 501동과 502동 사이에 위치)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504동, 505동을 제외한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501동·505동·508동 등)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급속1대(1채널), 완속2대(2채널)가 설치될 예정임
- 503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기는 502동·507동·508동 옥상 및 지하 PIT층에 설치될 예정임(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01동과 502동 사이 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동(501동·503동·504동·505동·507동·508동)의 일부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임(단,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공통】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채광·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관리 사항임
- 지하주차장의 팬룸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뿔칠을 대체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및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 시공법은 하자방지, 시공성 제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1종 환기장치 등)는 하자방지, 시공성 제고 등의 사유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3 바닥 및 천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부세대와 하부세대가 엇갈려 설치돼야 하므로 세대별 설치위치가 상이함(최하층 세대는 천장에만 설치, 최상층 세대는 바닥에만 설치)
- 하향식 피난을 위한 제품모델 및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음
-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으며 화재 시 발코니3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하여 외부로 대피해야 하므로 발코니3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3에는 철제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유형(공공분양, 행복주택) 및 지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2(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가스계량기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 (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 하고,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도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음
- 팸플릿 등에 표현된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사항이며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석고보드 설치 공법 상 이음부위 테이핑 시공 시 일부구간 평활도가 고르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벽체 및 천장에 음영이 질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시공 시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칠 경우 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공간계획에 따라 혹은 시공 과정에서 현관, 발코니, E/V홀 등 공간별 바닥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거치공간이 발코니3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실 및 욕실 등에 설치되는 환기구 및 환기장치, SP헤드, 박스류(수전함 등)의 설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부속품은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되나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타일(현관, 아트 월타일 제외)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대상 품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거실, 욕실, 주방 등)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유니트 및 덕트,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환기용유니트 위치,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 샤워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 질 수 있으며,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 지지 않음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세대 의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알파룸 벽체에 매입설치 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함
- 빨래자동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자동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됨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 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 도어록), 연락서비스[비상호출버튼(일반세대 욕실2에 한함), 비상연락장치(주거약자형 세대에 한함)],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IoT 가전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의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됨

【A-5블록】

- 505동 302호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세대)로 사용 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이나 민원을 통해 조경수의 추가식재나 식재이동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납부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설계획,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p>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사업승인조건에 의해 RFID기반 음식물종량기가 설치될 예정임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이전에 계약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사전방문행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에 안내드립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A-4블록]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옴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4블록]

구분	내용	적용여부	구분	내용	적용여부
건축 부분	단열조치 준수	적용	기계 부분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기계 부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전기 부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A-5블록]**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옴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A-5블록]**

구분	내용	적용여부	구분	내용	적용여부
건축 부분	단열조치 준수	적용	기계 부분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기계 부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전기 부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보일러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양장항 A-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쌍용건설(주) (120-81-01957), 금강산업(주) (131-81-04843)	-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외 4개사
고양장항 A-5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31-82-13727)	(주)케이씨씨건설 (214-81-69965), 동우건설(주) (136-81-15738)	-	(주)무영씨엠 건축사사무소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룩스(lux) *선택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작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청각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단차 없애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문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정 세면기	
	좌식 싱크대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야간센서등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시각경보기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 고양 사업본부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05.02.10:00 ~ 2023.05.04.18:00)
※ 계약체결기간 내 미신청시 설치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